

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2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3. 개정이유

- 현행 민간위탁 공증의무 규정은 계약·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·비용 발생 및 공증 비용 전가 우려
- 공증의무 규정 삭제로 행정절차 간소 및 수탁기관의 부담경감
※ 행정안전부 “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” 반영

4. 주요내용

- 민간위탁사무 추진 시 공증 의무규정 삭제 (제9조제1항)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‘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’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 삭제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수탁기관의 부담경감에 도움을 위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기존 제9조제1항 본문 중 “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”를, 안 제9조제1항에서는 “체결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음.

○ 이 조례개정안은 불필요한 절차·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정비하는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